'26. 12. 23. 실시 남양주시체육회장선거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 안내

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1 법규요약[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31조제2항]

○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도 포함)

○ 금지기간: 언제든지

○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도움말

-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선고 69도195판결).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9392판결 등).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2 할 수 없는 사례

○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이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임·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용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이 그 방법(여론조사기관 의뢰 등)이나 횟수를 불문하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나 적합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Ⅱ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 규정

1.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금지

1 규정요약[규정 제31조제1항]

○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10. 24. ~ 12. 23.)

※ 정관 제00조 제00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함. 이하 같음.

○ 금지행위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권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도움말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지하는 업적의 홍보에 해당될 수 있음(광주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전주)2019노27 판결).

2 할 수 없는 사례

○ 임·직원이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체육회장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의 개인 수상내역 등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이 체육회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송·배포하는 행위

2.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 금지

1 규정요약[규정 제31조제2·3항]

○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6. 10. 24. ~ 12. 23.)

○ 금지행위

-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도움말

-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행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규정 제31조제1항'과의 관계**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홍보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체육회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규정 제31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 할 수 없는 사례

○ 법령 등에서 발행이 허용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회장의 공약 실천사항,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체육회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 기술하는 행위

○ 체육회장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발언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활동사진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진에 담긴 모습이 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닌 체육회장 개인의 적극적인 기여 및 활동을 담은 경우

3.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등 금지

1 규정요약[규정 제31조제2항]

○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 금지기간: 선거기간 중(2026. 12. 12. ~ 12. 23.)

○ 금지행위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도움말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의 요건**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참조).
- **'정상적인 업무'의 판단**
 '정상적인 업무'라 함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 즉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2 할 수 없는 사례

○ 임·직원이 선거기간 중에 업무상 출장을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선거기간 중 휴가를 이용하여 산하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등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안 내 >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555-4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